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0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총 계	2,997,371,000	89,921,130
일 반 회 계	2,575,771,000	77,273,130
특 별 회 계	421,600,000	12,648,000
공기업특별회계(지역개발기금)	222,390,000	6,671,700
기 타 특 별 회 계	199,210,000	5,976,300
•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	8,746,000	262,380
• 의료급여기금운영	181,330,000	5,439,900
• 학교용지부담금	9,134,000	274,02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(명시이월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,536,304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8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